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76

2025. 8. 29.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14. 강남구청장(가족정책과)

나. 상정의결

-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5. 8. 29.)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생활국장 : 이용달)

가. 제안이유

○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업체의 위탁기간 만료됨(2025. 12. 31.字)에 따라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 및 운영 능력을 갖춘 업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및 동법 시행령(양성평등정책 관련기관 등)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 필요성

  ·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양성평등 정책 촉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

  · 수탁재산의 유지 및 관리

  ·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탁자가 정하는 사무 등

○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 설 립 일 : 1997. 9. 1.
- 위　　치 : 강남구 봉은사로 320, 4~7층 (연면적: 776.76㎡)
- 시설현황 : 요리교실, 바리스타실, 취업상담실, 정보화교실, 강의실 등

시설명	구분	층별 현황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봉은사로 320, 함께나눔센터)	4층	요리교실, 바리스타실, 창업보육실
	5층	취업상담실, 사무실, 강의실, 강사휴게실
	6층	정보화 교실, 종합실습실
	7층	대강의실, 701~703강의실

○ **민간위탁 기간** : 2026. 1. 1. ~ 2030. 12. 31. (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간 선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 분			금 액(원)	구성비(%)	산 출 근 거
지출원가	① 인건비~노무비~	기 본 급	333,237,000	44.6	- 서울시 사회복지시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제수당 명절휴가비	33,091,000	4.4	
		제수당 정액급식비	14,040,000	1.9	
		제수당 관리자수당	2,400,000	0.3	
		제수당 가족수당	5,920,000	0.8	
		제수당 연장근무수당	20,818,000	2.8	
		퇴직적립금	34,131,000	4.6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14,585,000	2.0	- 4대보험 공시요율(2025년)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5,995,000	2.1	
		보험료 고용보험료	4,088,000	0.5	
		보험료 산재보험료	2,560,000	0.3	
		보험료 장기요양보험	1,889,000	0.3	
		소 계	**482,754,000**	64.5	
	② 운영비	공공요금 전기요금	9,681,000	1.3	- 2022년 7월~2025년 6월 평균 공공요금
		공공요금 수도요금	2,250,000	0.3	
		공공요금 가스요금	4,538,000	0.6	
		공공요금 전화요금	10,680,000	1.4	
		소 계	**27,149,000**	3.6	
	③ 사업비	일반교육 강사비(분기55개)	98,112,000	13.1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경력개발컨설팅 및 진로코칭 집단상담	9,487,000	1.3	
		산모·신생아건강관리	34,200,000	4.6	
		학점은행제	30,219,000	4.0	
		폭력예방교육 위촉강사 보수교육 및 파견	14,000,000	1.9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4,820,000	0.6	
		다자녀 가정 수강료 감면액 지원	6,750,000	0.9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4차산업 일자리 박람회”	7,681,000	1.0	
		경력단절예방사업	8,420,000	1.1	
		소프트웨어 구입(어도비)	24,300,000	3.2	
		소 계	**237,989,000**	31.8	
지출원가 합계(Ⓐ=①+②+③)			**747,892,000**	**100%**	
수입원가	④ 수강료수입		282,383,874	85.0	- 2024년 7월~2025년 6월 수강료 수입 기준
	⑤ 기타수입		2,000,000	0.6	- 연간 법인전입금
	⑥ 사용료		47,836,640	1.44	- 공유재산법
수입원가 합계(Ⓑ=④+⑤+⑥)			**332,220,514**	**100%**	
위탁비용(Ⓐ-Ⓑ)			**415,671,486**	**0**	

다. 참고사항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5.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의 위탁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탁운영기간) 제4조에 따라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 서울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재계약 하는 경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Ⅰ. 동의안 제출 배경

○ 본 동의안은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5. 12. 31.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5조(승인 및 동의)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민간위탁 조례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동의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조례상의 내용을 준수하였으며,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으로 제출됨.

Ⅱ. 주요 사항의 검토

○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평생학습교육사업,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음.

○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 민간위탁 조례 제4

조제1항제3호에서는 구청장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민간위탁 여부는 해당 시설의 설립 목적과 업무의 성질, 능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임.

○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 수탁재산의 유지 및 관리,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탁자가 정하는 사무 등이며 위탁기간은 5년(2026.1.1 ~2030.12.31.)으로 제출되었음.

○ 한편,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성과평가)에 따라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는 2025. 7. 10. 관련 평가가 있었고, 평가 결과는 77.8점 임. 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 75점 이상이긴 하지만 점수가 낮은 편인데 그 사유와 평가 시 지적사항,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참고로 2025년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현지 조사 결과 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아래 표 참고), 이에 대한 사후조치 여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2025년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현지 조사 결과

세부 지적내용	조치 사항
행사 간담회 등 추진시 ‘강남구 주요경비 기준’을 초과한 급식비, 간식비 지출	주의

(자료: 가족정책과)

Ⅲ. 종합의견

○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 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시설의 성격과 기능을 고려해 볼 때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을 보유한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 지속성, 능률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사료됨.

○ 다만, 성과평가 결과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 노력이 요구되며, 향후 수탁자 선정 시 사업의 수행능력과 전문성, 시설 운영 계획의 적정성, 공신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수한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576

제출년월일 : 2025. 8. 14.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가족정책과

1. 제안이유

가.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업체의 위탁기간 만료됨(2025. 12. 31.字)에 따라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 및 운영 능력을 갖춘 업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나.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및 동법 시행령(양성평등정책 관련기관 등)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 필요성

-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은 여성의 능력개발 빛 경제적 자립 지원, 양성평등 정책 촉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수탁재산의 유지 및 관리

○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탁자가 정하는 사무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 설 립 일 : 1997. 9. 1.

○ 위　　치 : 강남구 봉은사로 320, 4~7층 (연면적: 776.76㎡)

○ 시설현황 : 요리교실, 바리스타실, 취업상담실, 정보화교실, 강의실 등

시설명	구분	층별 현황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봉은사로 320, 함께나눔센터)	4층	요리교실, 바리스타실, 창업보육실
	5층	취업상담실, 사무실, 강의실, 강사휴게실
	6층	정보화 교실, 종합실습실
	7층	대강의실, 701~703강의실

○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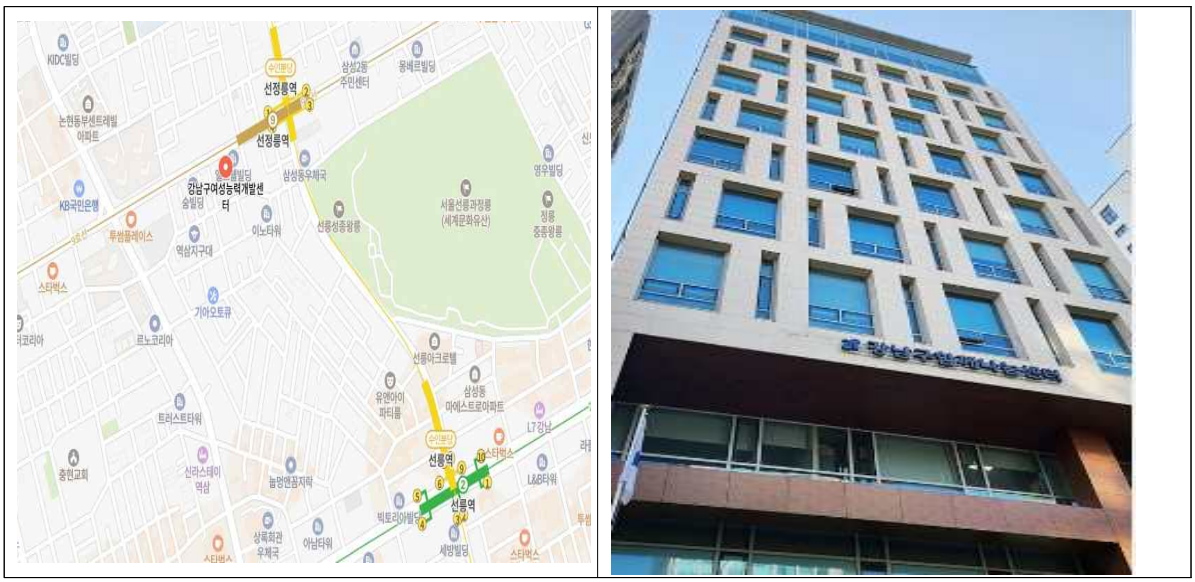

마. 민간위탁 기간 : 2026. 1. 1. ~ 2030. 12. 31. (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관 선정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747,892천원 (2025년 원가계산서 기준)

구 분				금 액(원)	구성비(%)	산 출 근 거
지출원가	① 인건비~노무비~	기 본 급		333,237,000	44.6	- 서울시 사회복지시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제수당	명절휴가비	33,091,000	4.4	
			정액급식비	14,040,000	1.9	
			관리자수당	2,400,000	0.3	
			가족수당	5,920,000	0.8	
			연장근무수당	20,818,000	2.8	
		퇴직적립금		34,131,000	4.6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14,585,000	2.0	- 4대보험 공시요율(2025년)
			국민연금보험료	15,995,000	2.1	
			고용보험료	4,088,000	0.5	
			산재보험료	2,560,000	0.3	
			장기요양보험	1,889,000	0.3	
		소 계		482,754,000	64.5	
	② 운영비	공공요금	전기요금	9,681,000	1.3	- 2022년 7월~2025년 6월 평균 공공요금
			수도요금	2,250,000	0.3	
			가스요금	4,538,000	0.6	
			전화요금	10,680,000	1.4	
		소 계		27,149,000	3.6	
	③ 사업비	일반교육 강사비(분기55개)		98,112,000	13.1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경력개발컨설팅 및 진로코칭 집단상담		9,487,000	1.3	
		산모·신생아건강관리		34,200,000	4.6	
		학점은행제		30,219,000	4.0	
		폭력예방교육 위촉강사 보수교육 및 파견		14,000,000	1.9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4,820,000	0.6	
		다자녀 가정 수강료 감면액 지원		6,750,000	0.9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4차산업 일자리 박람회”		7,681,000	1.0	
		경력단절예방사업		8,420,000	1.1	
		소프트웨어 구입(어도비)		24,300,000	3.2	
		소 계		237,989,000	31.8	
지출원가 합계(Ⓐ=①+②+③)				747,892,000	100%	
수입원가	④ 수강료수입			282,383,874	85.0	- 2024년 7월~2025년 6월 수강료 수입 기준
	⑤ 기타수입			2,000,000	0.6	- 연간 법인전입금
	⑥ 사용료			47,836,640	1.44	- 공유재산법
수입원가 합계(Ⓑ=④+⑤+⑥)				332,220,514	100%	
위탁비용(Ⓐ-Ⓑ)				415,671,486	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5.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의 위탁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탁운영기간) 제4조에 따라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 서울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재계약 하는 경우

작성자 :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행정8급 박지은(☏ 02-3423-5815)